서울특별시 순직 ·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750 제 안 일 자 : 2023년 6월 19일
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 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해 안 제8조제1항의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지원에 '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'을 추가로 신설함.

2. 주요내용

가.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지원에 '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'을 추가로 신설함. (안 제8조제1항)

서울특별시 순직 ·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) ① 시장은 순직	제8조(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) ①
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	
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	
있다.	
1.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	1
2.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	2
<u><신설></u>	3.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와 절차, 그 밖에	②
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

서울특별시 순직 ·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공사상소방공무원"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사망한 사람(이하 "순직소방공무원"이라 한다) 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·질병이 인정된 사람(이하 "공상소방공무원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 - 1.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에 따른 소방활동,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의 직무 수행 활동
 - 2. 「소방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·훈련 활동
- 제3조(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)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상소방공무

- 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- 1.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)
- 2. 자녀
- 3. 부모
- 4.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
-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.
- 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·시행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」 제5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시장은 지원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.
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
 - 2. 공사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
 - 3.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

- 4.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
- 5.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
- 6. 그 밖에 공사상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7조(순직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)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)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1.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
 - 2.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
 - 3.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와 절차,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9조(취업·창업 지원)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진로·직업 상담, 취업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,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 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- 제3조(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- 제4조(취업·창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9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